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91호 2022. 12. 21.(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33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실시계획인가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2-139호	거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교정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3
거창군 고시 제2022-141호	위천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 11
거창군 고시 제2022-143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12
거창군 고시 제2022-144호	도로명주소 고시 1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17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5
거창군 공고 제2022-1731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공원·유원지,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 공고 18
거창군 공고 제2022-1756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1
거창군 공고 제2022-1757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27
거창군 공고 제2022-1759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거창군 공고 제2022-1760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0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103호	거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48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133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거창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0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파출소)
 - 명칭 :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 면적 : 1,618㎡
 - 금회시행면적 : 1,618㎡
 - 사업내용 : 119안전센터 증축(차량창고, 대기실) 건립[건축면적 399.71㎡(증77.76㎡), 연면적 757.06㎡(증191.4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계					1,633	1,633		
1	위천면 장기리	509		대	1,633.0	1,633.0	거창군수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139호

거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교정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거창군관리계획(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거창군수

1.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공청사(교정시설)

○ 명칭 :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

다. 사업규모 :

종류	명칭	위 치	사업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공공 청사 (교정시설)	거창 교정시설 신축사업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번지 일원	157,524	157,524	11,392.53	19,844.05	경고 2013-436호 (2013.10.17)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1동

○ 성 명 : 법무부장관

마. 사업기간 : 당초 2014.11.27 ~ 2022. 12. 31.

변경 2014.11.27 ~ 2023. 06.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2.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6	3	답	1,219	1,219		법무부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1	답	4,706	4,706		법무부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2	답	1,481	1,481		법무부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3	답	1,277	1,277		법무부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4	답	3,483	3,483		법무부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5	답	3,839	3,839		법무부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6	답	1,377	1,377		법무부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7	답	2,184	2,184		법무부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9	답	2,957	2,957		법무부			
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8	2	도	109	109		법무부			
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9	1	답	585	585		법무부			
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78	1	답	265	265		법무부			
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79	1	답	1,271	1,271		법무부			
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14	임	6,804	6,804		법무부			
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7	전	658	658		법무부			
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8	전	995	995		법무부			
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9	임	60	60		법무부			
1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89	10	전	380	380		법무부			
1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0		전	264	264		법무부			
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2	1	답	8	8		법무부			
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4		답	44	44		법무부			
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5		답	1,899	1,899		법무부			
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답	458	458		법무부			
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3	답	990	990		법무부			
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4	답	540	540		법무부			
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5	답	66	66		법무부			
2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6	답	1,022	1,022		법무부			
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7	답	377	377		법무부			
2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8	답	410	410		법무부			
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9	답	382	382		법무부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5	답	50	50		법무부			
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6	답	263	263		법무부			
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3	답	925	925		법무부			
3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4	답	347	347		법무부			
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5	답	358	358		법무부			
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6	답	349	349		법무부			
3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8	답	228	228		법무부			
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8	답	275	275		법무부			
3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19	답	314	314		법무부			
4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0	답	289	289		법무부			
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1	답	281	281		법무부			
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2	답	291	291		법무부			
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3	답	307	307		법무부			
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6	27	답	111	111		법무부			
4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답	104	104		법무부			
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2	답	21	21		법무부			
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4	답	2	2		법무부			
4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8	창	183	183		법무부			
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9	창	53	53		법무부			
5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7	임	504	504		법무부			
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8		잡	1,454	1,454		법무부			
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8	4	답	61	61		법무부			
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8	5	답	12	12		법무부			
5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8	6	잡	133	133		법무부			
5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9		답	22	22		법무부			
5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9	1	답	10	10		법무부			
5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	39	전	3	3		법무부			
5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4	1	전	357	357		법무부			
5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4	2	답	301	301		법무부			
6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4	전	287	287		법무부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6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10	전	1,223	1,223		법무부			
6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11	전	179	179		법무부			
6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12	전	704	434		법무부			
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0	전	615	615		법무부			
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20	전	575	553		법무부			
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1	전	661	661		법무부			
6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2	전	88	88		법무부			
6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3	전	154	154		법무부			
6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5	34	전	122	122		법무부			
7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전	430	430		법무부			
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5	목	588	588		법무부			
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	대	364	364		법무부			
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4	전	294	294		법무부			
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5	답	284	284		법무부			
7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8	임	472	472		법무부			
7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9	임	153	153		법무부			
7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1	전	1,563	1,563		법무부			
7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2	전	167	167		법무부			
7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3	전	398	398		법무부			
8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4	전	581	581		법무부			
8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5	임	581	581		법무부			
8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6	임	617	617		법무부			
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6	목	11	11		법무부			
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18	목	83	83		법무부			
8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7	목	62	62		법무부			
8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8	목	14	14		법무부			
8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2	전	517	517		법무부			
8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3	전	432	432		법무부			
8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6	24	전	224	224		법무부			
9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7		답	1,190	1,190		법무부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7	1	임	785	785		법무부			
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8		답	1,521	1,521		법무부			
9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답	1,398	1,398		법무부			
9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	대	609	609		법무부			
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	전	360	360		법무부			
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4	전	1,271	1,271		법무부			
9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9	대	835	835		법무부			
9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0	대	868	868		법무부			
9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1	대	225	225		법무부			
1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2	대	426	426		법무부			
1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3	대	276	276		법무부			
1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4	대	301	301		법무부			
10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5	대	365	365		법무부			
1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6	대	396	396		법무부			
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7	대	504	504		법무부			
1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8	대	121	121		법무부			
1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19	대	239	239		법무부			
10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0	대	122	122		법무부			
10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1	대	171	171		법무부			
1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2	대	256	256		법무부			
1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3	대	208	208		법무부			
1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4	대	255	255		법무부			
1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5	대	237	237		법무부			
1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6	전	131	131		법무부			
1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7	전	409	409		법무부			
11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8	전	167	167		법무부			
1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29	전	252	252		법무부			
11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0	전	700	700		법무부			
11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1	전	928	928		법무부			
1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2	전	702	702		법무부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3	전	1,139	1,139		법무부			
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49	34	전	773	773		법무부			
12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0		답	1,904	1,904		법무부			
12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답	1,864	1,864		법무부			
12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	전	489	489		법무부			
12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2	전	418	418		법무부			
12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3	대	122	122		법무부			
1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5	전	150	150		법무부			
12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6	전	143	143		법무부			
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7	전	163	163		법무부			
1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8	전	256	256		법무부			
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9	전	156	156		법무부			
1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0	전	377	377		법무부			
13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1	전	106	106		법무부			
1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2	전	411	411		법무부			
13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3	전	96	96		법무부			
13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4	전	653	653		법무부			
1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1	15	전	85	85		법무부			
13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2		묘	770	770		법무부			
14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3	1	답	1,547	1,547		법무부			
1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3	2	답	1,319	1,319		법무부			
14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3	3	답	684	684		법무부			
1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답	3,217	3,217		법무부			
1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14	임	9,496	9,496		법무부			
14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2	임	274	274		법무부			
1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3	임	190	190		법무부			
1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4	임	202	202		법무부			
14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5	임	499	499		법무부			
1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6	임	62	62		법무부			
15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7	임	243	243		법무부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8	임	429	429		법무부			
1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9	임	839	839		법무부			
1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10	임	94	94		법무부			
15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11	임	466	466		법무부			
15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5		답	2,539	2,539		법무부			
15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6		답	4,258	4,258		법무부			
15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7		답	43	43		법무부			
15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7	답	250	250		법무부			
15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8	답	262	262		법무부			
16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3	답	911	911		법무부			
16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9	답	1,689	1,689		법무부			
16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10	답	1,612	1,612		법무부			
16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9	11	답	403	403		법무부			
1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0		답	1,356	1,356		법무부			
16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0	1	답	2,290	2,290		법무부			
1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1		전	136	136		법무부			
16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2		답	998	998		법무부			
16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3		답	1,525	1,525		법무부			
16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3	1	답	1,457	1,457		법무부			
17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4		답	2,360	2,360		법무부			
17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5		답	3,260	3,260		법무부			
17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5	1	구	199	199		법무부			
1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6	3	전	716	716		법무부			
1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6	2	답	711	711		법무부			
17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7		전	1,574	1,574		법무부			
17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8		전	1,557	1,557		법무부			
17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69	2	전	1,712	1,712		법무부			
17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6	답	617	617		법무부			
17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7	목	1,644	1,644		법무부			
18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8	목	691	691		법무부			

연번	위 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 류	이해관계인	
	행정동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8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9	임	34	34		법무부			
18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8	임	271	271		법무부			
18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20	답	646	646		법무부			
18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0	목	543	543		법무부			
18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1	목	283	283		법무부			
18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2	임	188	188		법무부			
18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3	임	232	232		법무부			
18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1	9	답	532	532		법무부			
18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1	8	답	75	75		법무부			
19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8	1	답	2	2		법무부			
1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4	2	답	1,224	1,224		법무부			
1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4	3	답	222	222		법무부			
19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5		답	450	450		법무부			
19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6	1	전	882	882		법무부			
1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89	3	구	324	324		법무부			
1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26	12	구	4,734	4,734		법무부			
19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26	13	구	442	442		법무부			
19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27		도	293	293		법무부			
19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27	2	도	323	323		법무부			
20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31	3	도	372	372		법무부			
2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731	2	도	96	96		법무부			
2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13	9	임	20	20		거창군			
20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16	35	임	116	116		법무부			
20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03	7	전	951	149		법무부			
2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03	8	전	837	65		법무부			
2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5	8	임	1,689	429		법무부			
2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6		임	1,686	1,686		법무부			
20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7	2	임	1,187	1,187		법무부			
20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15	답	209	209		법무부			
21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15	임	69	69		법무부			
2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70	15	답	63	63		법무부			
21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67	14	답	54	54		법무부			
2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297	13	임	806	806		법무부			

거창군 고시 제2022 - 141 호

위천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위천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계획 승인가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 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위천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2. 사업의 목적 : 위천면 지역 내 유휴시설(파출소)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창업공간 조성
3. 사업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79-8
4. 사업비 : 700백만원(국비 225, 도비 25, 군비 450)
5. 주요사업내용
 - ▶ 위천 행복나눔 공작소 조성 : 위천 파출소 리모델링(A=174.82㎡)
6. 사업시행자 : 거창군
7. 사업기간 : 2021 ~ 2023(3년간)
8. 사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

구분	지번	지목/구조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토지	위천면장거리479-8	대지	281	거창군	
건축물	위천면장거리479-8	조적조	177	거창군	

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940-8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거창군수

1. 고시일자 : 2022. 12. 21.

2. 고시방법 : 거창군보,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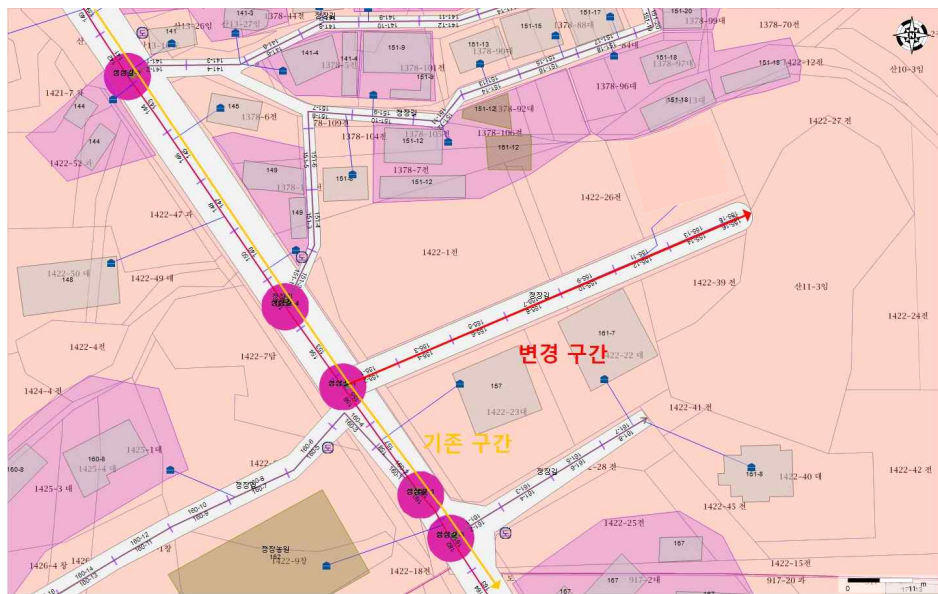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도로구간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 2022년 12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변경 조서

일련 번호	행정 구역	구 분	도로명	도로구간		중양선	건물 번호	사물 주소	도로구간 변경 사유	비 고
				시작지점	끝지점					
1	거창읍	변경 전	정장길	거창읍 대평리 1422-2 (정장길 155)	-	도면참조	없음	없음	종속구간 연장	직권
		변경 후	정장길	거창읍 대평리 1422-2 (정장길 155-1)	거창읍 대평리 1422-38 (정장길 155-16)	도면참조				

주소정보기본도



항공사진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1.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주곡로 1065-279 등 4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143-1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8길 42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지방도1099호선 내 「가조IC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 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거창군수

1. 도로의 명칭 : 지방도 1099호선

2.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2024.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가조IC 회전교차로 설치	가조면 일부리 980-2번지 일원	○ 회전교차로 설치 A=4,244㎡	거창군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양로 103)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건설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양로 103, 3층)	2022. 12. 14. ~ 2022. 12. 29.(15일간)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12. 19. ~ 2023. 1. 2.(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소	
	계				18,944	4,244			
1	가조면 일부리	946-13		도	1,629	548	거창군		
2	“	965-19		도	688	173	국토교통부		
3	“	118-3		도	315	269	국토교통부		
4	“	1259		도	626	107	국토교통부		
5	“	77-6		도	305	219	농림축산식품부		
6	“	77-5		구	189	51	농림축산식품부		
7	“	1036-6		도	1,047	614	국토교통부		
8	“	980-2		도	613	554	거창군		
9	“	1257-4		구	236	188	농림축산식품부		
10	“	1132		도	154	154	거창군		
11	“	1036-7		도	126	126	거창군		
12	“	1122		도	8,038	276	국토교통부		
13	“	967-4		과	236	117	국토교통부		
14	“	967-2		과	358	41	국토교통부		
15	“	966-2		전	14	14	국토교통부		
16	“	977	977-7	창	3,127	105	가조원우회 영농조합법인	가조면 마상리 452-5	
17	“	979-2	979-6	창	143	101	가조원우회 회영농조합법인	가조면 일부리 977	
18	“	979-4		답	252	252	국토교통부		
19	“	979-5		답	180	164	국토교통부		
20	“	977-6		창	223	21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21	가조면 일부리	978-2		답	52	37	국토교통부		
22	“	978-3		답	82	82	국토교통부		
23	“	977-4		답	48	28	국토교통부		
24	“	1036		임	263	3	국토교통부		

● 거창군 공고 제2022-1731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공원·유원지,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공원·유원지,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합니다.

2022. 12. 21.

거창군수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
주거지역	소 계	4,873,879	-	4,873,879	0.6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743	-	3,121,743	0.4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57	-	196,057	0.02	-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
상업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지역	소 계	1,271,445	-	1,271,445	0.16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1,243,003	-	1,243,003	0.15	-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
녹지지역	소 계	25,413,400	-	25,413,400	3.16	-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
	자연녹지지역	16,046,669	-	16,046,669	1.99	-
관리지역	소 계	262,139,621	-	262,139,621	32.60	-
	보전관리지역	171,787,047	-	171,787,047	21.36	-
	생산관리지역	8,261,516	감 43,136	8,218,380	1.03	-
	계획관리지역	82,091,058	증 43,136	82,134,194	10.21	-
농림지역		469,394,502	-	469,394,502	58.37	-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①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308번지 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 획관 리 지역	43,136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창포원 주변지역의 그린인프라 확장 사업을 통해 유원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92	8	집산 도로	447	남상면 월평리 2366	남상면 월평리 2280	일반 도로	거창 창포원	거창군고시 제2014-105호 (2014.9.18)
변경	소로	2	292	8	집산 도로	282	남상면 월평리 2366-8	남상면 월평리 2368-1	일반 도로	거창 창포원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92	소로 2-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부 노선축소 -L=447m → 282m(감 165m) -B=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지 조성에 따른 중점부 노선 축소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8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문화 공원	남상면 월평리 2308번지 일원	16,660	감) 16,660	-	거창군고시 제2014-115호 (2014.10.14.)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대산지구 농촌테마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폐지 - A=16,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지 조성에 따른 공원 폐지

다.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유원지	남상면 월평리 2308번지 일원	-	증) 43,136	43,136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지 신설 - A=43,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창포원 주변지역의 그린인프라 확장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유원지를 조성하고자 함

라.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구성비 (%)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	동		
계	43,136	5,615.38	10,274.55		7	100.0	
유희 시설	소계	3,125	-	-	-	7.2	
	다목적 놀이마당	3,125	-	-	-	7.2	
휴양 시설	소계	2,638	44	44	-	6.1	
	글램핑장	2,638	44	44	1	6.1	
특수 시설	소계	17,142	2,609.24	4,022.66		39.7	
	열대식물원	1,377	1,617.73	1,709.13	2	3.2	
	커뮤니티광장	9,497	-	-	-	22.0	
	진입광장	159	-	-	-	0.4	
	야외공연장	3,737	-	-	-	8.7	
	창포문화관	1,962	698	1,745	3	4.5	
	자연에너지 학습관	410	293.51	568.53	2	1.0	
편의 시설	소계	5,712	2,692.14	6,207.89	-	13.2	
	방문자센터	1,223	1,132.14	1,177.89	1	2.8	
	전시판매점	391	30	30	1	0.9	
	에코힐링센터	4,098	1,800	5,000	3	9.5	
관리 시설	소계	6,245	-	-	-	14.5	
	도로	2,678	-	-	-	6.2	
	주차장	3,567	-	-	-	8.3	
녹지 및 기타	소계	8,274	-	-	-	19.2	
	녹지	8,274	-	-	-	19.2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4. 관련도서 열람 및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환경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열람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거창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거창군수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하면 상촌경로당 등 7개소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2.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12. 21. ~ 2023. 1. 10. (21일간)

4. 지정위치 : 별첨1 위치도 참조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거창군 경제교통과(교통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2. 21. ~ 2023. 1. 10. (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2 / FAX : (055)940-334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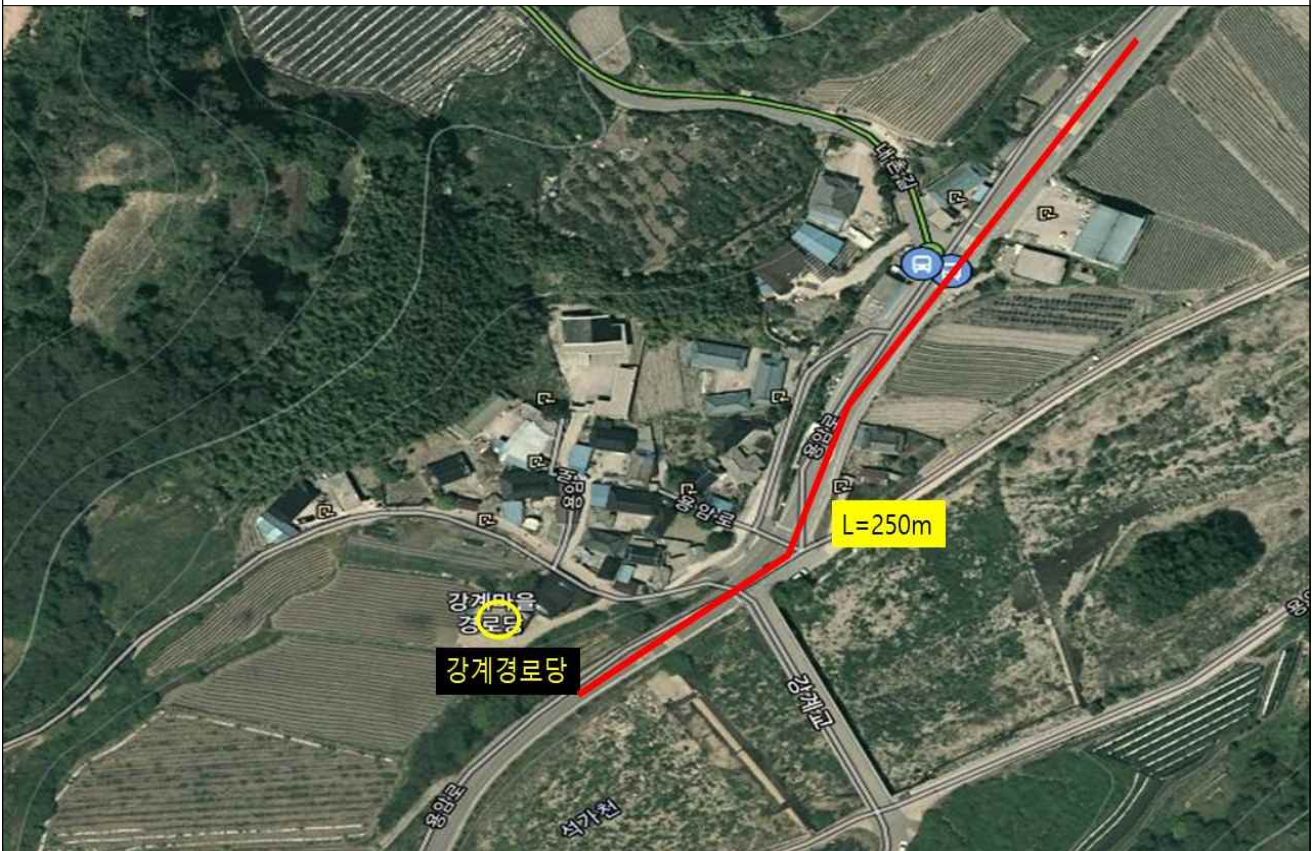
남하면 양항리 980-4 ~ 양항리 925-1 (L=460m)



남하면 대야리 1768 ~ 대야리 1454-2 (L=3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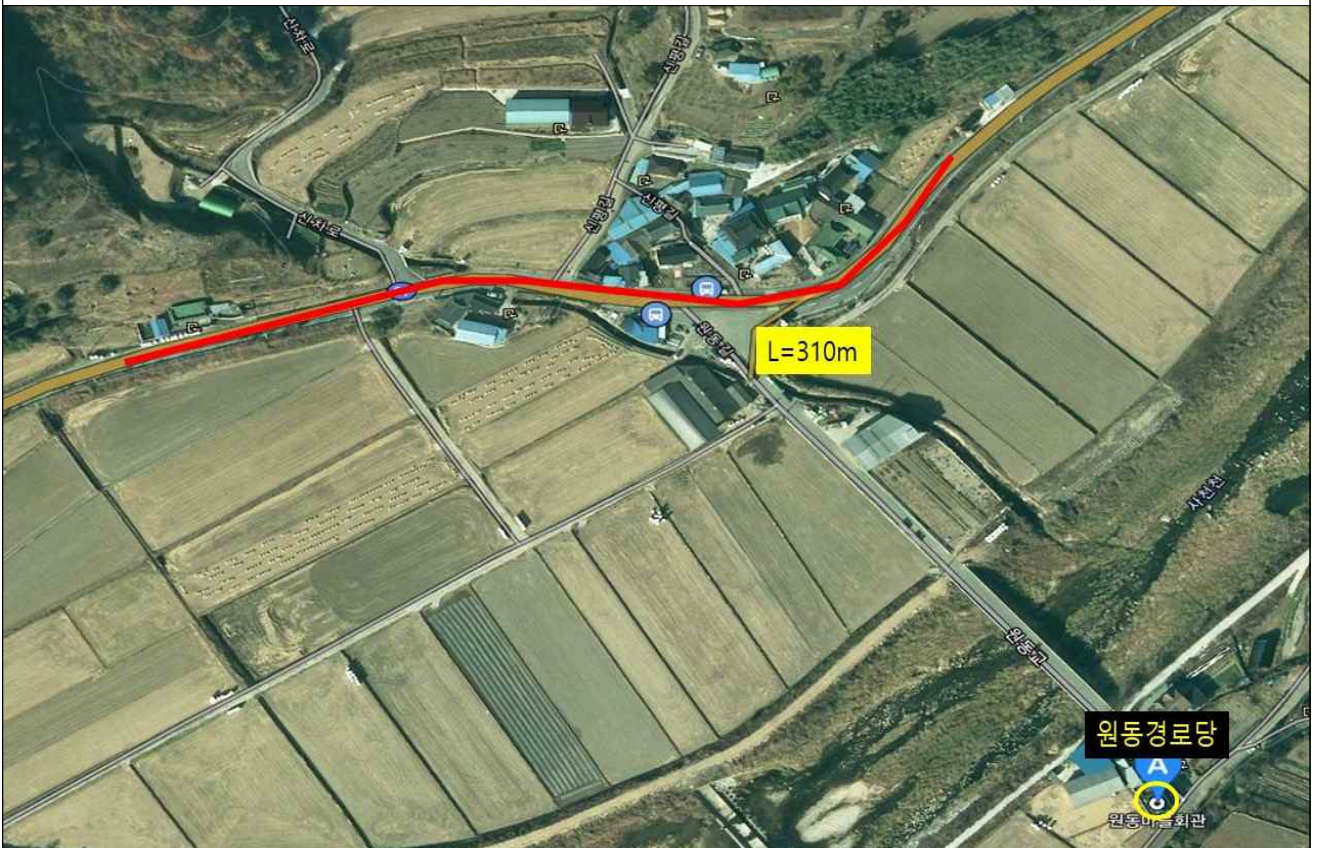
가북면 중촌리 2231-1 ~ 중촌리 1807-4(L=36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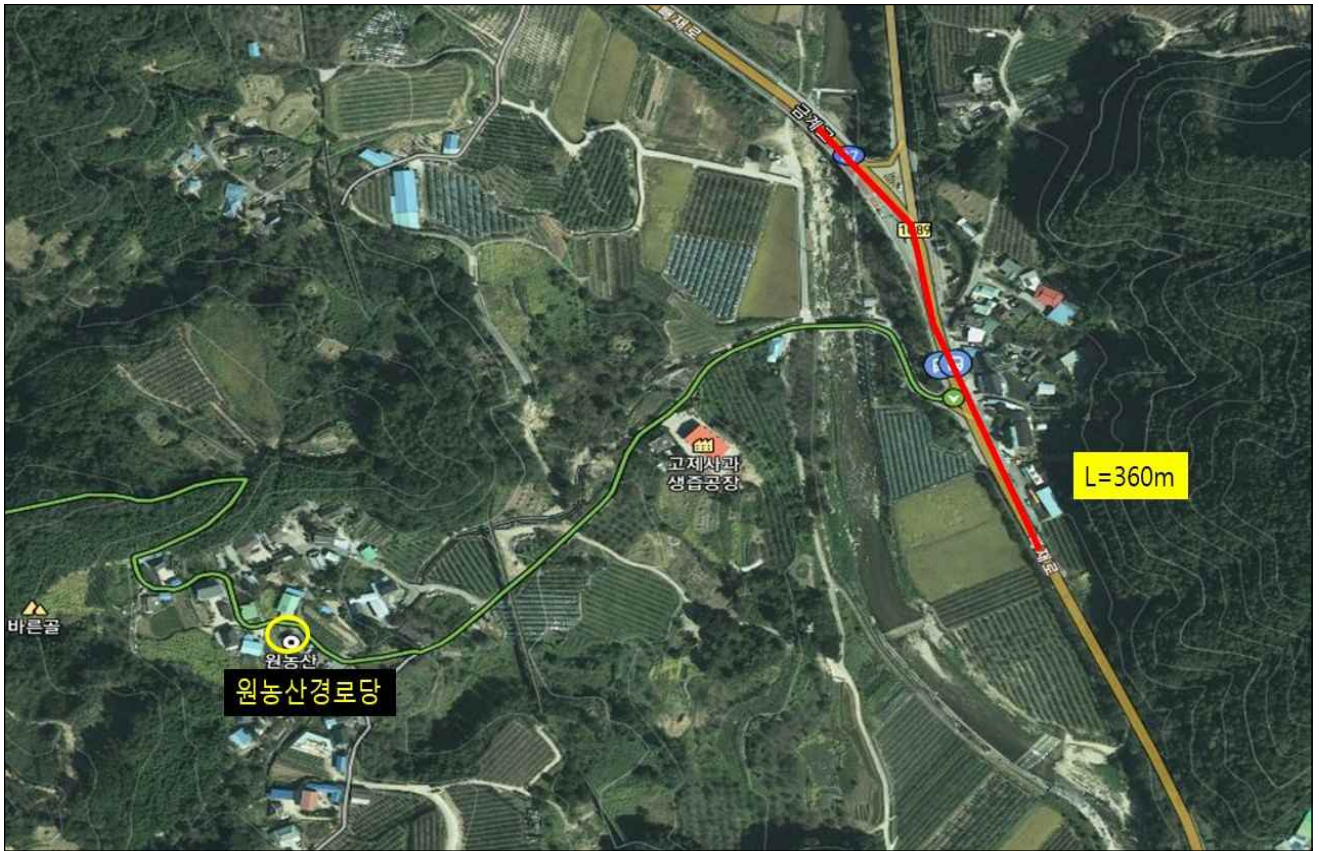
가북면 몽석리 172-1 ~ 몽석리 194-2 (L=250m)



신원면 청수리 318-2 ~ 청수리 104-2 (L=420m)



신원면 청수리 896-2 ~ 수원리 911-2 (L=310m)



고제면 농산리 322-2 ~ 농산리 354-3(L=360m)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22 - 1757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2년 12월 21일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농지(전) 조성(채소 재배)
2. 사업지구명: 북상 월성지구
3. 위치: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산209
4. 사업시행면적: 10,524m²

토지의 표시					개간사업 시행면적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북상	월성	산209	임	13,091m ²	10,524m ²	

5. 사업 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농지확대)
6. 총 사업비 : 33,750천원(부지조성 20,000천원, 작물시설 등 13,750천원)
7. 사업기간 : 사업시행(허가)일부터 12개월
8. 사업시행자 : 권영안(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173번지)
9. 이의신청기간 : 2022. 12. 21. ~ 2023. 1. 20.
10.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297mm×42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가.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때 탄력적 지원을 위하여 이자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특례보증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정의 인용 상위법령 변경(안 제2조)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나. 이자지원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조)

다. 이자지원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안 제5조)

라. 특례보증 신설함(안 제7조)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12. 21. ~ 2023. 1. 1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 10.(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경제교통과
- 2) 전화 055)940-3682, 팩스 055)940-3349, 이메일 jjjpearl@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하여”를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 나.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지원

2. 소상공인이 이차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

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차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자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계입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호,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자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p> <p>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4조(지원·제외 대상) ①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u>창업자금: 가게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u></p> <p>2. <u>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u></p> <p>3. <u>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u></p> <p>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소상공인"이란 「<u>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p> <p>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p> <p>3. "이자지원"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p> <p>가. <u>창업자금: 사업장 증축·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u></p> <p>나. <u>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출받은 자금</u></p> <p>제4조(소상공인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u>이자지원</u></p> <p>2. <u>소상공인이 이자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 수수료</u></p> <p>②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극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p>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④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이차지원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2.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차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차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차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

제7조(지원 절차) ① 이차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

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3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

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이자지원 및 착한가격업소 특례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을 확대

가) 범위: 5천만원 이내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나) 금액

(1) (현행 조례 제5조) 연 2.5퍼센트이내의 이자

(2) (변경)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다) 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2) 착한가격업소 특례지원 확대

- 가) (현행 조례 제5조) 최대 0.3퍼센트 이내 지원
- 나) (변경) 최대 0.5퍼센트 이내 지원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12. 21. ~ 2023. 1. 1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 10.(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경제교통과
- 2) 전화 055)940-3682, 팩스 055)940-3349, 이메일 jjjpearl@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시행”을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지원범위 등)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이차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차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3조제2호 중 “이차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제4조제3항”을 “제5조제2항”으로 “이차지원”을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조(이자지원 신청 절차)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차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 이차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p>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지원범위 등) 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이차지원의 지원 범위·금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차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함 <p>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범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준의 최대 0.5퍼센트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조(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p> <p>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p>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용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차지원금의 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차지원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차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자 심사)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심사 순위는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 금액), 사업체 최초 등록일자, 거창군 거주 연수 순으로 한다.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자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삭 제>

붙임 3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인 자. 다만, 증축·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

③ 이자지원의 지원 범위와 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자지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준 확대

2. 쓰레기봉투, 시설 개수·보수 사업비 등

제7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받고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예정인「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6.

거 창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71번지 일원
- 다. 사업의 규모 : A=10,821㎡ (9필지)
- 라. 사 업 기 간 : 2023년 ~ 2025년
- 마.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

2. 편입 토지 및 물건

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 토지 지번

토지 소재지	편입 지번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 편입물건 : 위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 나.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다.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2F)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우편번호:50147)
- 전화 및 팩스번호 : ☎ 055-940-8205, FAX:055)940-811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 12. 16. ~ 2022. 12. 31.(16일간)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창군 농업기술센터로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예정이며, 보상의 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보상가격 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이의의 신청) 내지 제85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 가.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주소·거소·소유자 불명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합니다.
- 마.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보상절차,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940-8205, FAX:055-940-8119]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소유자이외 권리자			비고
				면적 (m ²)	면적 (m ²)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9필지	답	1,0821.00	1,0821.00						
1	남상면 월평리	2264	답	828.60	828.60	남상면 상월평길 62-***	이*영				
2	남상면 월평리	2265	답	1,667.00	1,667.00	남상면 상월평길 62-***	이*영				
3	남상면 월평리	2266	답	761.00	761.00	남상면 월평리 11**	파주*씨달신의공파 종중(엽*봉)				
4	남상면 월평리	2267	답	1,207.40	1,207.40	남상면 하월평길 75-*	이*탁				
5	남상면 월평리	2268	답	344.70	344.70	남상면 하월평길 75-*	이*탁				
6	남상면 월평리	2269	답	1,897.10	1,897.10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 314, *동 ***호(낙민동, 동래한양아파트)	정*술				
7	남상면 월평리	2270	답	298.10	298.10	거창읍 수남로 221*-*	백*중				
8	남상면 월평리	2271	답	1,731.20	1,731.20	남상면 월평리 14**	강*봉				
9	남상면 월평리	2272	답	2,085.90	2,085.90	남상면 대산1길 10-*	박*수				

2022년 12월 16일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